



전시회 참가신청 및 계약서

킨텍스 전시1팀_ TEL : 031-995-8739 FAX : 031-995-8088 E-mail : imac@kintex.com

1. 참가업체정보

업체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체태		종목
주소		
담당자		소속 / 직책
전화		팩스
핸드폰		E-mail
홈페이지		
출품분야		
출품품목		

2. 부스신청 및 계약

해당 항목에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가 (VAT별도)	신청규모	금액	비고
<input type="checkbox"/> 독립부스	2,200,000원 / 부스	부스	원	
<input type="checkbox"/> 조립부스 (일반형)	2,500,000원 / 부스	부스	원	
<input type="checkbox"/> 프리미엄부스 (고급형)	3,000,000원/ 부스	부스	원	

- 부스의 기본단위는 3m × 3m이며 9m²의 배수로 신청 가능함 (최소 신청 규모 : 조립부스 9m², 독립부스 18m²)
- 조립부스 포함사항 : 전시면적 및 조립식 부스 제공
※ 측면 및 후벽면, 국/영문 상호간판, 형광등(40W) 1개, 스포트라이트(100W) 3개, 부스바닥 파이택스, 220V 소켓 2구(1KW), 안내데스크 및 의자 각 1개
- 계약금(참가비 총액은 50%)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입금, 잔금은 30일 이내 납부
- 참가비 납입계좌는 사무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Invoice) 참조

당사는 2016 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의 내용과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2016 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 사무국

전시 참가 규정

킨텍스 전시1팀_ TEL : 031-995-8739 FAX : 031-995-8088 E-mail : imac@kintex.com

제1조 (용어의 정의)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2016 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을 말한다.
- 「주최자」라 함은 KINTEX, KYUNGYON을 말하고, 주관자라 함은 KINTEX, KYUNGYON, KICOX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시회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 주최자는 신청 순서 및 참가비 납입 순서, 전시품 성격 순에 따라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 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한다.
-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납입 조건)

-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전시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은 30일 이내까지 완납해야 한다.
-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해 약)

-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전시자가 전시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변경 후 15일 이내에 주최(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6년 7월 20일 이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최(관)자에게 납부
- 2016년 7월 20일 ~ 8월 5일 기간 중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최(관)자에게 납부
- 2016년 8월 5일 이후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 할 수 없음,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100%)을 위약금으로 주최(관)자에게 즉시 납부

제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방화 규칙)

-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보충 규정)

-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